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선거시행세칙

(2020.09.23.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선거시행세칙(이하 세칙)은 학생회를 민주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선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본 세칙은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 선거(이하 사과대 선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학과(부) 학생회장 선거는 해당 학과(부)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준하여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시행세칙이 없을 시 본 세칙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본 세칙에 없는 사항은 사회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원칙)

1.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로 진행되어야 한다.
2. 선거는 전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의 사업과 활동을 발전적으로 평가, 지향하여 학우들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우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 선거는 회원들이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의 의의와 기능, 목표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확립하는 공론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제4조(구성원의 책임) 모든 회원은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사회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위상) 사과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제반의 업무를 세칙에 의거하여 집행, 조정할 권한을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선거에 있어서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6조(목적) 사과대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 대중적으로 치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구성)

1. 선관위는 당해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 전원(사퇴 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행)과 집행위원(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집행부 최대 2인)으로 한다. 집행위원 임명 시 운영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2. 집행위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3. 사회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은 당해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으로, 부위원장은 부

학생회장으로 한다.

4. 비상대책위원회로 이루어졌을 경우 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비상대책부 위원장으로 한다.

5.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되었을 시 위원장은 하나의 의결권만을 가지며 위원장의 의결권을 우선적으로 가진다. 단, 이로써 학과(부)의 의결권이 소멸되는 경우 해당 선관위에는 위원장으로서의 의결권이 없다.

제8조(업무 및 권한)

1. 사과대 선거에서 공정성, 민주성, 대중성을 구현할 제반 사업 및 활동을 기획, 집행한다.

2. 사과대 선거를 학우들의 관심 속에서 후보와 그 후보의 정책 및 공약이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한다.

3. 세칙과 선관위가 각 선거운동본부와 합의한 방식에 의거하여 선거에 관련한 집행을 감시하고 각 선거운동본부가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등을 포함한 가중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하여 타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4. 선관위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하고는 학과(부) 별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5. 선관위는 선거 후 제11장의 업무를 끝내고 해체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1. 선관위 위원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총학생회 회칙,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하였을 때

②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본부에 가입할 때

③ 본 회의 회원이 아닐 때

2. 선관위 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선관위 위원, 각 선거운동본부장에 한정한다.

3. 선관위 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서는 해임 요구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선관위 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선관위 재적인원 2/3 이상 동의하에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5. 선관위 위원에 대한 해임은 선관위 재적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때 해임 요구의 대상이 된 선관위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적 총수에서도 제한한다.

6. 부결 시 선관위 위원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된다.

제10조(소집, 개최 및 의결)

1. 선관위 제반 업무 처리와 후보자의 이의제기 등이 있을 시 위원장 혹은 선관위 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2. 선관위 재적인원 과반수가 출석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3. 의결은 선관위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개표 시 무효표 판정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학과(부) 선거관리위원회)

1. 학과(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각 학과(부) 학생회에서 책임진다.
2. 학과(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사퇴한 이후에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장 선거유관기관

- 제1절 학내언론 -

제12조(범위) 학내언론은 중앙대학교에 등록된 공식 언론기구 및 독립 언론기구(중대신문, UBS, 중앙문화, 녹지, 중앙헤럴드, 대학원신문사)로 규정한다.

제13조(역할 및 권리)

1. 학내언론은 선거에 대한 공정한 보도를 할 책임을 가진다.
2. 학내언론 보도가 최소한의 공정성을 상실하는 경우를 다음의 각 호로 규정한다.
 - ① 학내언론에 항을 제공한 선거운동본부에 편파적인 보도를 하였을 경우
 - ② 학내언론의 기자가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하여 선거운동본부에게 우호적이거나 편파적인 보도를 하였을 경우
3. 학내언론은 공정한 보도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선관위 및 각 선거운동본부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선관위와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와 관련한 취재를 위한 학내언론의 인터뷰나 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해야 한다.
4. 선관위는 학내언론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① 합동공청회, 공동정책간담회, 후보자토론회에서의 질문 우선권 부여
5. 제13조 2항에서 언급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선관위는 의결을 거쳐 해당 학내언론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절 선거운동본부 -

제14조(역할)

1.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는 후보와 그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로,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관위의 감독하에 후보의 선거운동, 선전 등을 진행하는 조직이다.
2. 선본은 후보자와 선본 구성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정세 분석, 정책 및 공약, 입장 등을 생산해 유권자의 이해를 도움과 동시에 실현 가능한 당선 후의 계획을 준비한다.
3. 선본은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를 위해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
4. 선본은 모든 학우에게 차별 없이 선거운동을 진행해야 한다.

제15조(구성 및 자격)

1. 각 선본은 정후보, 부후보, 선거운동본부장(이하 선본장), 선거운동본부원(이하 선본원)으로 구성된다.
2. 정·부후보는 당해 사과대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여야 한다.
3. 선본원은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재적생으로 제38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제16조(선거운동본부장)

1. 선본장은 선관위와의 소통에 있어서 선본을 대표함과 동시에 후보를 대변한다.
2. 선본장은 본 세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선본과 선본원이 세칙의 주요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

제17조(선거운동본부원)

1. 선본원은 선본 내부의 규정 및 결정에 따라 선본의 활동에 참여한다.
2. 선본원은 본 세칙의 주요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다.

제18조(선본 구성원 신고)

1. 각 선본은 선본 구성원을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선본원의 재학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와 현황 내역서로 하며 현황 내역서에는 선본 구성원의 이름, 학번, 소속 학과(부), 제15조 1항에 따른 선본 내에서의 직책을 포함한다.
2. 최초 선본 구성원 등록은 후보자 등록 시에 하며, 이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선관위가 정하는 방식으로 선본장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3. 선본 구성원의 자격이 없거나 이미 다른 선본의 구성원인 사람을 선본 구성원으로 신고하거나, 선본 구성원이 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임의로 선본 구성원으로 신고한 경우 선관위는 해당하는 사람의 선본 구성원 신고를 반려하고 해당 선본에 책임이 있는 경우 경중을 따져 징계할 수 있다. 단, 이중 등록자에 대해서는 양측 선본 모두에 책임을 물어 징계한다.

제19조(권리) 각 선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 세칙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및 선전을 선본 책임 하에 진행한다.
2. 선본이 선본 사무실 공간 확보에 대해 요구할 경우, 선관위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3. 선관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본 세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의무) 각 선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학생회칙과 본 세칙을 준수할 의무
2. 선관위의 결정사항 및 권고사항을 이행할 의무
3. 선관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를 의무
4. 기타 본 세칙이 선본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무

- 제3절 참관인 -

제21조(통칙)

1.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해당 투표소에 배치되어 투표진행을 참관하는 자를 말한다.
2. 각 후보자는 투표소 당 참관인 최대 1인을 배치할 수 있다.
3. 대표참관인은 선본장으로 한다.
4. 원격전자투표만을 시행하는 경우 개표참관인만을 둔다.

제22조(자격)

1. 참관인은 선본 구성원으로 한다.
2. 각 후보자는 등록서류와 함께 참관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참관인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 첫째 날 17시까지 교체할 참관인의 명단과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2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참관인을 배치할 수 없다.

제23조(이의제기)

1.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투표 진행 상황을 참관하여 이에 대하여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투표소 내에서 행한 참관인의 결정에 대해 후보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투표소에 참관인이 불참할 경우 선관위와 타 후보 측 참관인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4조(규제)

1.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없다.
2. 참관인이 투표소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선관위와 타 후보 측 참관인이 만장일치로 인정했을 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참관인은 투표 종료까지 투표소에서 참관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투표소에는 다른 참관인을 둘 수 없다.
3. 참관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① 투표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경우)
 - ②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언동을 하는 경우)
 - ③ 기타 선관위에서 부정행위로 결정한 경우

제25조(기타 사항)

1. 참관인은 투표 당일 오전 8시 30분에 선관위 위원의 투표함 이송을 참관한다.
2. 투표소 내에서 참관인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위원장의 입회 하에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표를 중지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3. 참관인이 결정하지 못할 때 대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제26조(개표참관인)

1. 각 후보의 대표참관인은 투표 둘째 날 12시까지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선관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개표참관인의 교체는 위원장의 허락 하에 한다.)
2. 개표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 득표의 검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3. 개표참관인이 개표 시작 30분전까지 개표장에 도착하지 못할 시 개표참관을 불허한다.

제4장 선거

- 제1절 통칙 -

제27조(선거일정)

1. 사과대 선거는 매 학년도 11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선거일정은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이외의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4. 2항의 일정은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에서 후보 등록 마감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2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제28조(선거권)

1. 선거인은 선거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재학 중인 본 회원으로 한다.
2. 다음 연도 2월 졸업 예정자는 기본적으로 선거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다음 연도 2월 졸업이 불확실한 자는 투표가 가능하며 투표한 사람은 선거인으로 인정한다.
3. 선관위는 선거일 5일 전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선관위는 모든 선본에게 선거인명부 요약본을 공개할 수 있다
4. 다음 연도 재선거 시행 시 선거인은 4학년을 포함한 본 회의 회원 모두로 한다.

제29조(피선거권)

1. 재학 중인 본 회원으로 4차 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2. 5개 학과(부) 이상의 선거인 총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단, 5개 학과(부)에서 각각 10명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30조(후보자추천)

1. 제29조 2항에 따라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후보자 추천서에는 회원의 성명, 학번, 소속 단과대학과 학과(부), 서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
3. 추천은 복수 추천이 가능하다.

제31조(후보자 등록) 사과대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롤미팅 30분 전까지 사과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재학증명서
- ② 제30조에 의한 추천서
- ③ 대표참관인, 투표참관인 명단
- ④ 출마 소견서, 후보 약력 소개서
- ⑤ 후보자 사진 (후보자 공고용 사진으로 사용되며 디지털 파일로 제출한다.)
- ⑥ 선거운동본부 현황 내역서와 선본 구성원의 재학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제32조(입후보자 심사)

1. 선관위는 등록마감 후 제31조에 의거하여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이에 어긋날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2. 입후보자가 제31조의 구비서류를 등록마감 시각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제33조(사퇴규정)

1. 선관위와 사회과학대학 및 학과(부) 학생회 집행부, 기타 대표자 중 선거운동을 하려는 자는 추천 시작 사흘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2. 선관위는 입후보를 하거나 선본장 혹은 선본원으로 활동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퇴할 수 없다.
3. 사퇴하려는 자는 사퇴서와 사유서 등 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선관위 위원이 33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관위를 사퇴할 경우 해당 학과(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한 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입후보자 최종 등록: 룰미팅) 선관위는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 최종 등록을 위한 모임을 소집하여야 하며 역할을 다음 각 호의 규정으로 한다. (단, 참여자는 입후보자와 대표참관인으로 하며, 불참 시 선관위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① 등록 구비 서류 확인 및 최종 등록 결정
- ② 선거시행세칙 검토
- ③ 기타 선거에 필요한 제반 사항
- ④ 경선 시, 선거운동에서 사용할 기호 결정(다수의 추천을 받은 후보부터 기호를 결정한다.)

- 제3절 선거운동 -

제35조(선거운동)

1.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 행위로 규정한다. (단,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 추천 기간 중 아래와 같은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① 후보자추천, 설문조사, 후보자 추대 모임 등

제36조(부정선거운동)

1.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

- ① 매수 및 이해유도
 - ② 금품수수
 - ③ 선거의 자유 방해
 - ④ 선전 방해 (자보 등 선전매체의 훼손을 포함한다.)
 - ⑤ 투표권 행사 및 투표 절차 방해
 - ⑥ 선관위 업무 방해
 - ⑦ 허위 사실 유포
 - ⑧ 후보자 비방
 - ⑨ 제38조에 따른 선거운동 제한자의 선거운동 참여
 - ⑩ 선거운동 제한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롤미팅에서 합의된 장소 이외의 모든 곳이 선거운동 제한 장소에 해당한다.)
 - ⑪ 사전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의심행위는 선관위의 판단 하에 사전선거운동임이 명백하거나, 선관위로의 제보가 있거나, 공론화가 된 경우 조사한다.)
 - ⑫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된 후의 선거운동
 - ⑬ 기타 본 세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통한 선거운동
2. 선관위는 부정선거운동에 대해 조사한 후, 후보자, 후보가 속한 선본 또는 그 구성원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행위에 관여하였을 경우 징계한다. 자세한 징계 기준은 제6장에 따른다.

제37조(선거운동기간)

1.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선관위가 정한다.
2. 선거운동기간 이전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경고 조치한다.

제38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 본 회의 회원이 아닌 자, 사회과학대학 선관위, 사회과학대학 및 학과(부) 학생회 집행부, 기타 대표자로 한다.
2. 기타 대표자의 규정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며 이를 사퇴 공고 시 공지해야 한다.
3. 1항의 규정을 위배한 경우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를 준다.

- 제4절 선거유세 -

제39조(총칙) 유세는 개인유세와 합동유세로 나누며 선거운동기간에 진행한다.

제40조(개인유세)

1. 후보자의 개인유세는 강의실, 옥외 연설회와 간담회로 국한한다. (학과(부) 및 단과대학 학생회실에 준하는 장소에서의 연설회는 금지한다.)
2. 간담회의 형식은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다.
3. 사제 유인물은 종류를 불문하고 선관위의 사전 허가를 거친다. 이후 선관위의 심의필을 추가하여 후보의 이름을 밝히고 배포한다. (단,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민주적인 선거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시 선관위의 결정으로 배포금지를 명할 수 있다.)

4. 1, 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를 준다.

제41조(합동유세)

1. 선관위는 2회의 합동유세를 개최할 수 있다.
2. 합동유세는 선관위가 정한 날짜에 따른다.
3. 합동유세의 순서는 후보 등록 시 추천하여 정한다.
4. 공고된 유세 시간 30분 전까지 후보자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유세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한 후보 당 유세시간은 공연, 지지유세, 본 유세를 포함 50분으로 한다. (단, 유세 교체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50분을 넘어서면 주의 1회를, 또 다시 5분이 지나면 경고 1회와 동시에 유세를 중단시킨다
6. 타 후보자의 유세 시 유세를 방해할 수 없다.
7. 각 후보자는 선관위가 정하는 형태의 유세에 응할 의무를 가진다.
8. 이외의 합동유세 진행은 위원장이 책임진다.
9. 합동유세의 형식은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있다면 각 선거운동본부와 선관위의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선거문화제와 결합하는 합동유세 등)

제42조(합동공청회)

1. 합동공청회는 선관위의 책임 하에 시행된다.
2. 후보자는 합동공청회의 자리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징계가 주어진다.
3. 합동공청회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 학내언론의 질의 및 응답, 참석자의 서면 질의로 구성된다.
4. 합동공청회의 세부사항은 롤미팅에서 결정한다.

제5장 이의제기

제43조(이의제기)

1. 유권자는 선거 전반에 관하여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와 선본원은 대표참관인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제1항을 위반하여 선관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제44조(이의제기의 처리)

1.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선관위 결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2. 이의제기의 처리는 선관위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6장 징계

- 제1절 총칙 -

제45조(정의)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와 기타 선관위가 징계 사유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후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6조(징계의 종류)

1. 징계는 시정 명령, 주의, 경고로 나누며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 3회시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2. 징계의 종류는 임의적 징계와 필요적 징계로 나누며 그 결정은 제48조, 제49조에의한다.

제47조(징계의 통보)

1. 시정 명령과 주의는 해당 선본장을 통해 해당 선본(후보)에게 구두로 통보하며, 경고는 통보와 함께 이를 공고한다.
2. 시정 명령이나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후보가 이를 2시간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선본장을 통해 해당 선본(후보)에게 주의 1회 또는 경고 1회를 준다.
3. 경고를 받은 선본은 경고 공고 게시를 12시간 이내에 경고 사과문과 함께 게시판에 게시한다.
4. 경고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 ① 경고 1회 - 경고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
 - ② 경고 2회 - 경고 후 하루(24시간)동안 개별 강의실 유세 금지, 합동유세 시 유세시간 20분 감축
 - ③ 경고 3회 - 해당 후보자의 사퇴

- 제2절 징계의 의결 -

제48조(임의적 징계)

1. 임의적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징계를 할 수 있다' 또는 '경고 1회를 줄 수 있다' 등으로 규정된 경우와 기타 선관위가 징계 사항으로 결정한 것으로 징계의 결정이 선관위 재량으로 되어 있는 징계를 말한다.
2. 임의적 징계는 선관위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필요적 징계)

1. 필요적 징계라 함은, 규칙 각 조항에 '징계를 한다.' 또는 '경고 1회를 준다.' 등으로 규정된 것으로 징계의 결정이 선관위 재량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2항의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필요적 징계는 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이 각 규칙의 조항에 따라 시행한다. 단, '징계를 한다.' 또는 '주의 1회 또는 경고 1회를 준다.'라고 규정된 경우 선관위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이 주의 또는 경고를 준다.

제50조(재심의)

1. 대표참관인은 경고나 주의 2회로 인하여 경고 1회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선관위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 재심은 기존 결정에 대해 1회 더 심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7장 투표

- 제1절 총칙 -

제51조(투표일과 투표시간)

1. 투표는 2일에 걸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투표시간은 첫째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둘째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3. 정해진 기간동안 투표율이 미달될 경우, 선관위의 협의 하에 1일에 한하여 연장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4. 전체 투표율이 50%를 미달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52조(투표용지 및 투표소)

1. 투표용지는 선관위가 제작한다.
2.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3. 투표소에는 선관위 또는 해당 학과(부) 선관위 홍보물 이외의 유인물 부착을 불허한다.

제53조(투표자의 자격)

1. 선거인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만 투표할 수 있다.
 - ① 학생증, 신분증 또는 국가인정 자격증
 - ②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로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교학지원팀이나 학과(부) 사무실에서 학번 대조가 가능한 자, 대표참관인과 선관위 위원이 만장일치로 공인하는 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분확인이 가능한 자)

제54조(투표절차)

1. 선거인은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투표할 수 있다.
 - ① 선관위의 신분확인
 - ② 선거인명부 확인
 - ③ 투표용지 배부
 - ④ 투표

제55조(투표소에서의 질서)

1. 투표소에는 선관위 위원, 참관인, 투표자, 후보자만 있을 수 있다.
2. 투표소에서는 투표만이 가능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3.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한다.

- 제2절 투표함의 이송과 보관 -

제56조(투표 개시 전 이송)

1. 투표함은 투표 당일 오전 8시 30분에 각 참관인의 참관 아래 선관위 위원이 투표함에 자물쇠를 채우고 투표소로 이송한다.

2.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및 제반 물품은 참관인의 입회 아래 해당 선관위 위원에게 인수한다.
3. 각 투표소의 선관위 위원은 투표함의 이송 전후에 참관인에게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 받는다.

제57조(투표마감 후 이송)

1. 투표가 끝난 후 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이 투표함을 봉하고 참관인이 확인한 후 선관위 위원과 함께 선관위실로 이송한다.
2. 투표함 이송 시 함께 구비해야 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 ① 기재한 선거인명부
 - ② 남은 투표용지
 - ③ 제반 기표 용품
3. 각 투표소의 선관위 위원은 투표함의 이송 전후에 참관인에게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 받는다.

제58조(투표함 선관위실 도착 후) 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은 투표함, 제57조 2항의 서류, 물품 등을 인수한 즉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제59조(투표함의 보관)

1. 투표함은 선관위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선관위실이 투표함 보관에 부적합할 시 각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 학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 제3절 전자투표의 특례 -

제60조(전자투표의 정의) 전자투표는 종이투표를 대체 또는 병행하여 투개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투표방식을 말한다.

제61조(전자투표의 구분) 전자투표의 방식은 현장전자투표와 원격전자투표로 한다.

1. 현장전자투표: 교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하게 하는 방식
2. 원격전자투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거인이 개인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투표하게 하는 방식

제62조(전자투표의 시행) 선관위는 전자투표의 방식과 종이투표와의 병행여부를 정하여 전자투표 시행을 의결할 수 있다.

제63조(보안원칙)

1. 전자투표의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① 선거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선거권 없는 자의 투표를 방지할 것.

(현장전자투표의 경우는 제53조와 같고, 원격전자투표의 경우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 미리 선거인들에게 부여한 일회용 코드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

나. 선거인들에게 일회용 코드가 포함된 투표링크를 부여하는 방법.

(가목 및 나목의 경우 선거인들이 다른 선거인의 일회용 코드를 알 수 없도록 임의의 코드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 선거인들의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실명인증을 받는 방법.

라. 선거인들의 종합정보시스템(포털) 계정을 이용하는 방법.

② 투표자의 정보를 기록하여 한 번 투표를 마친 선거인은 투표를 거부하고, 여러 투표방식을 병행하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도 다시 투표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

③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든 투표의 비밀을 보장할 것.

(일회용 코드를 부여하는 경우 일회용 코드와 투표내용을 대조할 수도 없어야 한다.)

④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든 개표 전까지 득표수의 보안을 유지할 것

2. 현장전자투표의 경우 이 장 제2절의 투표함에 관한 규정 대신 해당 전자투표기의 사용법에 따라 봉인, 이송한다. 원격전자투표의 경우에는 해당 장 제2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부정선거운동) 전자투표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정선거운동으로 본다.

1. 다른 사람의 코드를 입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여된 링크로 접속하는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투표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의 투표를 쳐다보거나, 여럿이 서로의 투표를 보여주며 공동으로 투표하는 행위
3.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촬영, 인증하는 행위
4. 투표시스템을 조작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수를 증감하거나, 다른 사람의 투표정보를 알아내거나, 개표 전에 득표수를 알아내는 행위
5. 투표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

제8장 개표

제65조(개표시간) 개표시간은 선관위가 결정, 공고한다.

제66조(통칙)

1. 개표는 선관위 위원만이 할 수 있다.
2. 유, 무효표 및 특정후보의 득표기준은 선관위가 정한다

제67조(개표장)

1.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선관위가 결정하여 공고한다.
2. 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는 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3. 후보자는 개표시간 3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개표 종료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

제68조(개표소)

1. 개표소는 방청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치해야만 한다.
2. 개표소는 선관위 위원과 개표참관인만이 있을 수 있다.
3. 개표소에서의 연락은 위원장(혹은 부위원장)만이 할 수 있다.

제69조(개표절차)

1. 개표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① 투표인수공고
 - ② 투표함개봉
 - ③ 개표
 - ④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 ⑤ 후보의 득표 묶음별로 분류 후 투표함에 재투입
 - ⑥ 현황판에 기재

제70조(무효투표)

1. 아래와 같은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 ①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 ②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경우
 - ③ 둘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경우
 - ④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⑤ 선관위에서 제공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⑥ 이상의 것 이외의 경우에는 개표위원의 논의 후 선관위가 결정한다.

제71조(효력)

1. 한 투표함에서 5%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투표함에 대하여 무효 처리한다.
2. 전체적으로 5%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투표자체가 무효이다.
3. 전체 투표율이 50%를 미달할 경우에는 개표하지 않는다.
4. 1, 2위 간의 득표차가 무효표 수 이하일 경우 재투표를 한다.

제9장 당선

제72조(당선의 기준)

1.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득표차이는 전체 투표수의 무효표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3. 선거가 단선으로 치러질 경우 해당 후보는 투표를 실시한 선거인의 과반의 찬성을 득표해야 하며, 찬성과 반대의 득표 차는 기권표보다 커야 한다.

제73조(당선공고)

1. 개표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당선공고에 관련한 이

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동의를 얻어 당선공고를 한다.

2. 당선공고 이후 24시간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4시간이 넘을 경우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다.

3.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선관위는 즉시 소집하여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이의 의결은 선관위 재적인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24시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당선확정을 공고한다.

제10장 재투표 및 재선거

제74조(재선거)

1. 제51조 4항에 해당하거나 후보자 미등록 시 선거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입후보절차부터 다시 시작한다.

2. 재선거 일정은 선관위가 논의하여 결정 및 공고한다.

제75조(결선투표) 제71조 4항에 해당하는 경우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결선투표를 제75조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무효표와 관계없이 다득표자가 당선된다.

제76조(재투표 및 결선투표 절차)

1. 시기와 시일을 연장하여 적당한 시기에 투표 행위만을 행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2. 개표 후 선본에서 이의제기를 하여 선관위의 논의를 통해 이의가 수용된 경우 실시한다.

3. 재투표 일정은 선관위가 논의하여 결정 및 공고한다. (단, 선거 종료 이후 일주일 이내에 실시한다.)

4.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제11장 선거정리업무

제77조(선거정리업무)

1. 선관위는 개표 종료일부턴 당일을 포함하여 7일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선관위의 관리하에 있는 물품과 자산의 정리
- ② 인수인계가 필요한 자료의 소유권 이전
- ③ 선본이 제출했거나 선관위가 생산한 각종 자료의 정리
- ④ 개인정보가 포함된 모든 자료를 교학지원팀으로 반납
- ⑤ 기타 선거의 마무리를 위해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2. 선관위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1항의 업무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제12장 선거공영제도

제78조(목적)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고려하여 선거를 치러야 하며, 후보자의 재력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하에 선거관련 비용을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비에서 부담한다.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 선거비용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비용의 부담이 후보자로 나서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려한다.

제79조(운영원칙)

1. 각 선본은 선거공영제도의 시행에 따라 해당 학기 학생회비의 최대 5%를 지원받을 수 있다.
2. 선거공영제도의 지원금은 등록된 각 선본에 동일하게 분배한다.
3. 선거공영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선거자금의 사용은 현수막, 포스터, 일반대자보, 자료집, 유인물 제작 등에 한하고 자세한 내용은 롤미팅에서 정한다.
4. 각 선본은 개표 후 1주일 이내에 지원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5. 선거공영제도의 공정성과 유용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선본은 지원받은 금액의 절반만큼의 공탁금을 선관위에 위탁하고 제79조 4항에 명시된 것의 검토가 끝난 직후 공탁금을 각 선본으로 반환한다. 단, 제79조, 제80조에 위배되는 선본의 경우 그 공탁금은 선관위에 의해 해당 학기 학생회비로 편성된다.

제80조(조건) 선거공영제도는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선본에 적용된다.

- ① 본 세칙에 의해 입후보한 후보자의 선본
- ② 개표 후 총 유효득표수가 10% 이상인 선본
- ③ 선거기간 중 부정부패행위에 의해 후보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은 선본

제81조(선거비용총액제한제)

1. 선거비용의 과다지출을 막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하에서 선거비용총액제한제를 실시한다.
2. 선거비용총액은 첫 번째 롤미팅에서 논의한 후,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13장 온라인선거의 특례

제82조(온라인선거)

1. 온라인선거는 선거유세 등 선거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망으로 진행하는 선거를 말한다.
2. 선관위는 감염병 재난, 기타 천재지변으로 대면선거가 곤란할 때는 학우들의 출석여부, 재난상황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할 범위를 정하여 온라인선거를 의결할 수 있다.
3. 온라인선거에 있어서는 이 세칙의 다른 규정보다 이 장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83조(동시선거의 특례) 총학생회 선거와 동시에 사회과학대학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관위는 서울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사회과학대학 선거의 투개표를 함께 시행하기로 의결할 수 있다.

제84조(비대면 업무원칙)

1. 온라인선거의 경우 롤미팅과 선관위 회의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2. 온라인선거의 경우 선관위의 다른 의결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서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제85조(등록절차에서의 특례) 선관위는 선거공고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특례를 함께 공고할 수 있다.

- ① 추천인의 수를 줄인다는 것
- ② 추천인의 자필서명 대신 전자적 방법의 연명도 인정한다는 것
- ③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의 재학증명서 현장 제출 대신 온라인 활용 방법도 인정한다는 것

제86조(개인유세)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롤미팅에서 제39조에 정하지 않은 방식의 개인유세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세칙에서 금지한다고 명시한 방식의 개인유세는 온라인선거에서도 계속 금지된다.

- ① 중계방송 형식의 개인유세에서 선본원은 선본원임을 밝히지 않고는 발언하거나 댓글을 게시하지 말 것
- ② 중계방송 형식의 개인유세는 수어, 통역 또는 실시간 속기를 제공할 것
- ③ 영상 형식을 포함한 모든 유인물은 선관위의 심의를 받을 것
- ④ 영상 형식의 유인물은 시작 전 [제0대 사회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심의필]을 5초 이상 자막으로 표시하고, 낭독할 것
- ⑤ 유인물(영상 형식은 제외한다) 상단에 [제0대 사회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 심의필]이라는 표시를 할 것
- ⑥ 영상 형식의 유인물은 자막과 화면해설(TTS 프로그램으로 읽을 수 있는 화면해설자막도 허용한다)을 포함할 것
- ⑦ 이미지 형식의 유인물은 대체 텍스트를 삽입하거나, 유인물의 내용을 설명하는 텍스트와 함께 게시할 것
- ⑧ 한 플랫폼에 하나의 계정만을 지정하여 홍보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정이 정지 또는 해지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계정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 ⑨ 후보자 또는 선본원은 지정된 계정 외에는 홍보물에 대하여 추천, 공유, 댓글 등의 기능을 사용하지 말 것

제87조(합동공청회) 선관위는 합동공청회를 온라인으로 중계할 수 있다. 이 때, 시청자에게 공청회 도중에도 질의할 기회를 한 번 이상 주어야 한다.

제14장 부칙

제88조(선거지침의 제정) 이의신청에 의해 선관위가 심의 결정하며, 본 세칙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선거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단, 그 범위는 본 세칙을 효력을 벗어날 수 없다.)

제89조(선거시행세칙의 효력 발생) 본 세칙은 2020학년도 2학기 단대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

쳐 제10대 사회과학대학 선거에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